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 수행 중 『실신』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실신 등으로 인한 상병」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업무처리 절차나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행정소송 수행과정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임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산재인정 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사무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

전결 09/11

협조자

시행 산재보상정책과-3437 (2018.09.11.) 접수 보상계획부-5476 (2018.09.11.)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 044-202-7714 전송 044-202-8091 / 2gyelong@korea.kr / 비공개(5)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상병』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업무수행 중 『실신』에 따른 잦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패소와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 마련

1 검토 배경

- 『실신 등에 따른 상병』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지사간 업무 처리절차나 방법 등에서 상이한 처분 결정 사례 다수
- 또한, 행정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사건이 패소하는 경향이 있어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을 통해 효율적 업무 처리 필요

2 처리방향

- (원칙)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상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외상성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업무상 재해로 인정)
 - 외상성 상병 없이 『실신』 등의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 실신 등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기존질환 등에 대해 조사 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 『실신 등의 상병』과 외상성 상병을 함께 진단받아 요양신청:
 - ① 『실신 등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질병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②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외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외상만 업무상 재해(사고)로 인정(판정위원회 절차 필요없음)
- 기타 출장중 또는 출퇴근중 발생한 경우에도 위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

3 행정사항: 지침내용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공단에서는 재해조사 방법, 업무처리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시행